

제1943호 고양시보

2023년 1월 10일(화)

차 례

조 례

고양시 조례 제2629호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
고양시 조례 제2630호	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3
고양시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5
고양시 조례 제2632호	고양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55

규 칙

고양시 규칙 제1154호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7
고양시 규칙 제1155호	고양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83
고양시 규칙 제1156호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91
고양시 규칙 제1157호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93

훈 령

고양시 훈령 제396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정 폐지훈령	95
고양시 훈령 제397호	고양시 현충탑관리사무소 설치 및 관리인 복무 규정 폐지훈령	97

제1943호

고양시보

2023년 1월 10일(화)

차 례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2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297호선 외 1개 노선]사업 도시
관리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99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23-25호

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재공람 공고 105

고양시 공고
제2023-3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12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전 열람 공고 106

제26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월 10일

고양시 조례 제2629호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획정책관
입 안 자	과 장 성 명	기획정책관 최 현 석
	팀 장 성 명	정책팀장 백 현 숙
	담 당 자 성명·전화	윤 서 학 (031-8075-2063)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제안이유

- 한시 조례인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18년 8월 31일 이후 효력이 없어짐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조례를 폐지함.

제26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월 10일

고양시 조례 제2630호

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도시브랜드담당관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도시브랜드담당관 왕 연 우
	팀 장 성 명	국제협력팀장 정 소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준 혁 (031-8075-2788)

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제안이유

- 한시 조례인 「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이 없어짐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조례를 폐지함.

제26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월 10일

고양시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정비) 고양시 조례 중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인용 법령 및 조문을 별표 6과 같이 정비한다.

제8조(「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정비) 고양시 조례 중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인용 법령 및 조문을 별표 7과 같이 정비한다.

제9조(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고양시 조례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용어 등을 현행 법령에 따라 별표 8과 같이 정비한다.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법무담당관
입안자	과장 성명	법무담당관 서 병 하
	팀장 성명	법제지원팀장 이 영 인
	담당자 성명·전화	오 규 은 (031-8075-2303)

[별표 6]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정비 내역(제7조 관련)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	기획정책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4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개정
2			제18조제1항 제2호	제13조	제14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			제20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4			제22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5	도시브랜드 담당관	고양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자치법」 개정
6			제25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7	행정지원과	고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
8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1호	「지방자치법」 제90조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법」 개정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9	주민자치과	고양시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
10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
11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지방자치법」 개정
12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	「지방자치법」 개정
13	일자리 정책과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법」 개정
14	소상공인 지원과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4조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5			제32조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6			제33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
17	여성가족과	고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8조제3호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8	문화예술과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자치법」 제161조	「지방자치법」 개정
19	신청사 건립단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법」 개정
20			제16조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1	도로정책과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3조	「지방자치법」 제140조	「지방자치법」 제157조	「지방자치법」 개정
22	주택과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법」 개정
23			제26조제2항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4	농업정책과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
25	공원관리과	고양시 일산문화공원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지방자치법」 제140조	「지방자치법」 제157조	「지방자치법」 개정
26	수도행정과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1조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정비 내역(제8조 관련)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	평화미래 정책관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2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제7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3	청년담당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제5항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4	일자리 정책과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5	소상공인 지원과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4항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6	기후 에너지과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7	평생교육과	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8			제12조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9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2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0			제20조의2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1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2	관광과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44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3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제7조제5항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4	주차교통과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5	시민안전과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6	주택과	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6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7	건축 디자인과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8		고양시 건축 조례	제15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9	도시재생과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4제4항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0			제30조제2항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1	재정비 관리과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2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2			제27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9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8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23	보건정책과	고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9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4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내역(제9조 관련)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	언론홍보 담당관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			제13조제1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			제13조제3항	민원사무,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 민원처리기준표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4	기획담당관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5	예산담당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6	징수과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제3조제1항	법 제71조의2제1항	법 제103조의3제1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7			제3조제1항 제1호	법 제71조의2제1항	법 제103조의3제1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8	기업지원과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8조제2항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9	소상공인 지원과	고양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0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1	복지정책과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2	여성가족과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3			제48조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4	노인복지과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5	아동 청소년과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3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6	기후 에너지과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7			제2조제2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8			제3조제1항	특별법 제25조	특별법 제26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9	식품안전과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1항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0			제6조제3항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1	평생교육과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22	문화예술과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3		고양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4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4	관광과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5			제2조제3호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6			제2조제4호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7	버스정책과	고양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3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28	주차교통과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제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9			제3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0	재난대응과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1			제2조제1항제2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2			제2조제2항	「자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자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7제3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3	건축 디자인과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4			제8조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를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5		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제2항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6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7			제7조제2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38	재정비 관리과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6조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9	도시농업과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16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40	연구개발과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41	생태하천과	고양시 지하수 조례	제10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42	수도행정과	고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1조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u><신 설></u>	<u>제7조(「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정비) 고양시 조례 중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인용 법령 및 조문을 별표 6과 같이 정비한다.</u>
<u><신 설></u>	<u>제8조(「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정비) 고양시 조례 중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인용 법령 및 조문을 별표 7과 같이 정비한다.</u>
<u><신 설></u>	<u>제9조(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고양시 조례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용어 등을 현행 법령에 따라 별표 8과 같이 정비한다.</u>

현행	개정																																																						
<신 설>	[별표 6]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정비 내역(제7조 관련) <table><tr><th>연번</th><th>부서명</th><th>자치법규명</th><th>해당조문</th><th>현행</th><th>개정</th><th>비고</th></tr><tr><td>1</td><td rowspan="4">기획정책관</td><td rowspan="4">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td><td>제1조</td><td>「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4조</td><td>「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td><td>「지방자치법」 개정</td></tr><tr><td>2</td><td>제18조제1항 제2호</td><td>제13조</td><td>제14조</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3</td><td>제20조</td><td>제17조제1항</td><td>제18조제1항</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4</td><td>제22조제2항</td><td>제13조제3항</td><td>제14조제3항</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5</td><td rowspan="2">도시브랜드 담당관</td><td rowspan="2">고양시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td><td>제14조</td><td>「지방자치법」 제39조</td><td>「지방자치법」 제47조</td><td>「지방자치법」 개정</td></tr><tr><td>6</td><td>제25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td></tr><tr><td>7</td><td rowspan="2">행정지원과</td><td>고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td><td>제7조제1항</td><td>「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td><td>「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td><td>「지방자치법」 개정</td></tr><tr><td>8</td><td>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td><td>제2조제1항 제1호</td><td>「지방자치법」 제90조</td><td>「지방자치법」 제102조</td><td>「지방자치법」 개정</td></tr></table>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	기획정책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4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개정	2	제18조제1항 제2호	제13조	제14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	제20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4	제22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5	도시브랜드 담당관	고양시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자치법」 개정	6	제25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7	행정지원과	고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	8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1호	「지방자치법」 제90조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법」 개정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	기획정책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4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개정																																																	
2			제18조제1항 제2호	제13조	제14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			제20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4			제22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5	도시브랜드 담당관	고양시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자치법」 개정																																																	
6			제25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7	행정지원과	고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																																																	
8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1호	「지방자치법」 제90조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법」 개정																																																	

현행		개정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th>부서명</th><th>자치법규명</th><th>조·항·호</th><th>현행</th><th>개정</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9</td><td rowspan="4">주민자치과</td><td>고양시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td><td>제1조</td><td>「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td><td>「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td><td>「지방자치법」 개정</td></tr> <tr> <td>10</td><td>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td><td>제1조</td><td>「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td><td>「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td><td>「지방자치법」 개정</td></tr> <tr> <td>11</td><td>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td><td>제1조</td><td>「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td><td>「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td><td>「지방자치법」 개정</td></tr> <tr> <td>12</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d>제7조제1항</td><td>「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td><td>「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td><td>「지방자치법」 개정</td></tr> <tr> <td>13</td><td>일자리 정책과</td><td>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td><td>제1조</td><td>「지방자치법」 제142조</td><td>「지방자치법」 제159조</td><td>「지방자치법」 개정</td></tr> <tr> <td>14</td><td rowspan="3">소상공인 지원과</td><td rowspan="3">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td><td>제24조제3항</td><td>「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td><td>「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 <tr> <td>15</td><td>제32조제3항</td><td>「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td><td>「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 <tr> <td>16</td><td>제33조제1항</td><td>「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td><td>「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td><td>「지방자치법」 개정</td></tr> <tr> <td>17</td><td>여성가족과</td><td>고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td><td>제8조제3호</td><td>「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td><td>「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td><td>「지방자치법」 개정</td></tr> </tbody> </table>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9	주민자치과	고양시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	10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	11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지방자치법」 개정	12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	「지방자치법」 개정	13	일자리 정책과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법」 개정	14	소상공인 지원과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4조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5	제32조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6	제33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	17	여성가족과	고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8조제3호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9	주민자치과	고양시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																																																															
10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																																																															
11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지방자치법」 개정																																																															
12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	「지방자치법」 개정																																																															
13	일자리 정책과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법」 개정																																																															
14	소상공인 지원과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4조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5			제32조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6			제33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																																																															
17	여성가족과	고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8조제3호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																																																															

현행		개정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th>부서명</th><th>자치법규명</th><th>해당조문</th><th>현행</th><th>개정</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18</td><td>문화예술과</td><td>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td><td>제1조</td><td>「지방자치법」 제144조</td><td>「지방자치법」 제161조</td><td>「지방자치법」 개정</td></tr> <tr> <td>19</td><td rowspan="2">신청사 건립단</td><td rowspan="2">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td><td>제1조</td><td>「지방자치법」 제142조</td><td>「지방자치법」 제159조</td><td>「지방자치법」 개정</td></tr> <tr> <td>20</td><td>제16조</td><td>「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 <tr> <td>21</td><td>도로정책과</td><td>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td><td>제13조</td><td>「지방자치법」 제140조</td><td>「지방자치법」 제157조</td><td>「지방자치법」 개정</td></tr> <tr> <td>22</td><td rowspan="2">주택과</td><td rowspan="2">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td><td>제10조제1항</td><td>「지방자치법」 제142조</td><td>「지방자치법」 제159조</td><td>「지방자치법」 개정</td></tr> <tr> <td>23</td><td>제26조제2항</td><td>「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 <tr> <td>24</td><td>농업정책과</td><td>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td><td>제1조</td><td>「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td><td>「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td><td>「지방자치법」 개정</td></tr> <tr> <td>25</td><td>공원관리과</td><td>고양시 일산문화공원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td><td>제9조제5항</td><td>「지방자치법」 제140조</td><td>「지방자치법」 제157조</td><td>「지방자치법」 개정</td></tr> <tr> <td>26</td><td>수도행정과</td><td>고양시 수도급수 조례</td><td>제1조</td><td>「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td><td>「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td><td>「지방자치법」 개정</td></tr> </tbody> </table>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8	문화예술과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자치법」 제161조	「지방자치법」 개정	19	신청사 건립단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법」 개정	20	제16조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1	도로정책과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3조	「지방자치법」 제140조	「지방자치법」 제157조	「지방자치법」 개정	22	주택과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법」 개정	23	제26조제2항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4	농업정책과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	25	공원관리과	고양시 일산문화공원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지방자치법」 제140조	「지방자치법」 제157조	「지방자치법」 개정	26	수도행정과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1조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8	문화예술과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자치법」 제161조	「지방자치법」 개정																																																																		
19	신청사 건립단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법」 개정																																																																		
20			제16조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1	도로정책과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3조	「지방자치법」 제140조	「지방자치법」 제157조	「지방자치법」 개정																																																																		
22	주택과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법」 개정																																																																		
23			제26조제2항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4	농업정책과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																																																																		
25	공원관리과	고양시 일산문화공원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지방자치법」 제140조	「지방자치법」 제157조	「지방자치법」 개정																																																																		
26	수도행정과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1조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																																																																		

현행	개정																																																																													
<신설>	[별표 7]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정비 내역(제8조 관련) <table><tr><th>연번</th><th>부서명</th><th>자치법규명</th><th>해당조문</th><th>현행</th><th>개정</th><th>비고</th></tr><tr><td>1</td><td rowspan="2">평화미래 정책관</td><td>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td><td>제12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td></tr><tr><td>2</td><td>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td><td>제7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td></tr><tr><td>3</td><td>청년담당관</td><td>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td><td>제12조제5항</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td></tr><tr><td>4</td><td>일자리 정책과</td><td>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td><td>제11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td></tr><tr><td>5</td><td>소상공인 지원과</td><td>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td><td>제15조제4항</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td></tr><tr><td>6</td><td>기후 에너지과</td><td>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td><td>제19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td></tr><tr><td>7</td><td rowspan="5">평생교육과</td><td rowspan="2">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td><td>제11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td></tr><tr><td>8</td><td>제12조</td><td>「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9</td><td rowspan="2">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td><td>제12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td></tr><tr><td>10</td><td>제20조의2</td><td>「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11</td><td>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td><td>제10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td></tr></table>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	평화미래 정책관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2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제7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3	청년담당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제5항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4	일자리 정책과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5	소상공인 지원과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4항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6	기후 에너지과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7	평생교육과	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8	제12조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9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2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0	제20조의2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1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	평화미래 정책관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2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제7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3	청년담당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제5항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4	일자리 정책과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5	소상공인 지원과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4항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6	기후 에너지과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7	평생교육과	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8			제12조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9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2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0			제20조의2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1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현행		개정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th>부서명</th><th>자치법규명</th><th>해당조문</th><th>현행</th><th>개정</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12</td><td rowspan="2">관광과</td><td>고양시 관광진흥 조례</td><td>제44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td></tr> <tr> <td>13</td><td>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td><td>제7조제5항</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td></tr> <tr> <td>14</td><td>주차교통과</td><td>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td><td>제20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td></tr> <tr> <td>15</td><td>시민안전과</td><td>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td><td>제9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td></tr> <tr> <td>16</td><td>주택과</td><td>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td><td>제16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td></tr> <tr> <td>17</td><td rowspan="2">건축 디자인과</td><td>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td><td>제18조제1항</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td></tr> <tr> <td>18</td><td>고양시 건축 조례</td><td>제15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td></tr> <tr> <td>19</td><td rowspan="2">도시재생과</td><td rowspan="2">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td><td>제4조의4제4항</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td></tr> <tr> <td>20</td><td>제30조제2항</td><td>「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 <tr> <td>21</td><td rowspan="2">재정비 관리과</td><td rowspan="2">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td><td>제21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td></tr> <tr> <td>22</td><td>제27조제4항</td><td>「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9조</td><td>「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8조</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 </tbody> </table>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2	관광과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44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3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제7조제5항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4	주차교통과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5	시민안전과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6	주택과	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6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7	건축 디자인과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8	고양시 건축 조례	제15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9	도시재생과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4제4항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0	제30조제2항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1	재정비 관리과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2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2	제27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9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8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2	관광과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44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3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제7조제5항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4	주차교통과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5	시민안전과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6	주택과	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6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7	건축 디자인과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8		고양시 건축 조례	제15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9	도시재생과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4제4항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0			제30조제2항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1	재정비 관리과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2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2			제27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9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8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현행		개정																					
		<table><tr><th>연번</th><th>부서명</th><th>자치법규명</th><th>해당조문</th><th>현행</th><th>개정</th><th>비고</th></tr><tr><td>23</td><td rowspan="2">보건정책과</td><td>고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td><td>제9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td></tr><tr><td>24</td><td>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td><td>제10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td></tr></table>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23	보건정책과	고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9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4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23	보건정책과	고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9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4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현행	개정																																																		
<신 설>	[별표 8]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내역(제9조 관련) <table><tr><th>연번</th><th>부서명</th><th>자치법규명</th><th>해당조문</th><th>현행</th><th>개정</th><th>비고</th></tr><tr><td>1</td><td rowspan="3">언론홍보 담당관</td><td rowspan="3">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d>제2조제5호</td><td>「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td><td>「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2</td><td>제13조제1항</td><td>「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td><td>「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3</td><td>제13조제3항</td><td>민원사무, 민원사무처리기준표</td><td>민원, 민원처리기준표</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4</td><td>기획담당관</td><td>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td><td>제1조</td><td>「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td><td>「행정절차법」 제52조의2</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5</td><td>예산담당관</td><td>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td><td>제10조</td><td>「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6</td><td rowspan="2">징수과</td><td rowspan="2">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td><td>제3조제1항</td><td>법 제71조의2제1항</td><td>법 제103조의3제1항</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7</td><td>제3조제1항 제1호</td><td>법 제71조의2제1항</td><td>법 제103조의3제1항</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able>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	언론홍보 담당관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	제13조제1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	제13조제3항	민원사무,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 민원처리기준표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4	기획담당관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5	예산담당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6	징수과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제3조제1항	법 제71조의2제1항	법 제103조의3제1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7	제3조제1항 제1호	법 제71조의2제1항	법 제103조의3제1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	언론홍보 담당관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			제13조제1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			제13조제3항	민원사무,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 민원처리기준표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4	기획담당관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5	예산담당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6	징수과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제3조제1항	법 제71조의2제1항	법 제103조의3제1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7			제3조제1항 제1호	법 제71조의2제1항	법 제103조의3제1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현행		개정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th>부서명</th><th>자치법규명</th><th>해당조문</th><th>현행</th><th>개정</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8</td><td>기업지원과</td><td>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td><td>제18조제2항</td><td>「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 <tr> <td>9</td><td rowspan="2">소상공인 지원과</td><td>고양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td><td>제15조제1항</td><td>「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 <tr> <td>10</td><td>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td><td>제1조</td><td>「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td><td>「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 <tr> <td>11</td><td>복지정책과</td><td>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td><td>제10조</td><td>「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 <tr> <td>12</td><td rowspan="2">여성가족과</td><td rowspan="2">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td><td>제11조</td><td>「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td><td>「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 <tr> <td>13</td><td>제48조</td><td>「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 <tr> <td>14</td><td>노인복지과</td><td>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td><td>제16조제2항</td><td>「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 </tbody> </table>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8	기업지원과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8조제2항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9	소상공인 지원과	고양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0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1	복지정책과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2	여성가족과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3	제48조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4	노인복지과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8	기업지원과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8조제2항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9	소상공인 지원과	고양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0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1	복지정책과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2	여성가족과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3			제48조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4	노인복지과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현행		개정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th>부서명</th><th>자치법규명</th><th>해당조문</th><th>현행</th><th>개정</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15</td><td>아동청소년과</td><td>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td><td>제23조</td><td>「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 <tr> <td>16</td><td rowspan="3">기후에너지과</td><td rowspan="3">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및 지원에 관한 조례</td><td>제1조</td><td>「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td><td>「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 <tr> <td>17</td><td>제2조제2호</td><td>「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td><td>「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 <tr> <td>18</td><td>제3조제1항</td><td>특별법 제25조</td><td>특별법 제26조</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 <tr> <td>19</td><td rowspan="2">식품안전과</td><td rowspan="2">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td><td>제6조제1항</td><td>「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td><td>「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 <tr> <td>20</td><td>제6조제3항</td><td>「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 </tbody> </table>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5	아동청소년과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3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6	기후에너지과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7	제2조제2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8	제3조제1항	특별법 제25조	특별법 제26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9	식품안전과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1항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0	제6조제3항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5	아동청소년과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3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6	기후에너지과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7			제2조제2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8			제3조제1항	특별법 제25조	특별법 제26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9	식품안전과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1항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0			제6조제3항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현행		개정																																																							
		<table><tr><th>연번</th><th>부서명</th><th>자치법규명</th><th>해당조문</th><th>현행</th><th>개정</th><th>비고</th></tr><tr><td>21</td><td>평생교육과</td><td>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td><td>제18조</td><td>「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22</td><td rowspan="2">문화예술과</td><td>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td><td>제25조제1항</td><td>「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23</td><td>고양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td><td>제11조제2항</td><td>제12조</td><td>제14조</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24</td><td rowspan="3">관광과</td><td rowspan="3">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td><td>제2조제1호</td><td>「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td><td>「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25</td><td>제2조제3호</td><td>「의료법」 제27조의2제1항</td><td>「의료혜택증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26</td><td>제2조제4호</td><td>「의료법」 제27조의2제2항</td><td>「의료혜택증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27</td><td>버스정책과</td><td>고양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td><td>제2조</td><td>「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2"</td><td>「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3</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able>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21	평생교육과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2	문화예술과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3	고양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4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4	관광과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5	제2조제3호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	「의료혜택증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6	제2조제4호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	「의료혜택증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7	버스정책과	고양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3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21	평생교육과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2	문화예술과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3		고양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4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4	관광과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5			제2조제3호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	「의료혜택증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6			제2조제4호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	「의료혜택증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7	버스정책과	고양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3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현행		개정																																																																					
		<table><tr><th>연번</th><th>부서명</th><th>자치법규명</th><th>해당조문</th><th>현행</th><th>개정</th><th>비고</th></tr><tr><td>28</td><td rowspan="2">주차교통과</td><td rowspan="2">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td><td>제1조</td><td>「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td><td>「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29</td><td>제3조제1항</td><td>「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td><td>「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30</td><td rowspan="3">재난대응과</td><td rowspan="3">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td><td>제2조제1항제1호</td><td>「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td><td>「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31</td><td>제2조제1항제2호</td><td>「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td><td>「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32</td><td>제2조제2항</td><td>「자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td><td>「자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7제3항</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33</td><td rowspan="5">건축 디자인과</td><td rowspan="2">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td><td>제3조제2항</td><td>「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td><td>「공동주택관리법」 제2조</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34</td><td>제8조</td><td>「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td><td>「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35</td><td>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td><td>제11조제2항</td><td>「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36</td><td rowspan="2">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td><td>제7조제1항</td><td>「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td><td>「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37</td><td>제7조제2항</td><td>「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td><td>「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able>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28	주차교통과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제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9	제3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0	재난대응과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1	제2조제1항제2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2	제2조제2항	「자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자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7제3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3	건축 디자인과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4	제8조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5	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제2항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6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7	제7조제2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28	주차교통과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제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9			제3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0	재난대응과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1			제2조제1항제2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2			제2조제2항	「자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자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7제3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3	건축 디자인과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4			제8조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5		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제2항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6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7			제7조제2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현행		개정																																														
		<table><tr><th>연번</th><th>부서명</th><th>자치법규명</th><th>해당조문</th><th>현행</th><th>개정</th><th>비고</th></tr><tr><td>38</td><td>재정비관리과</td><td>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td><td>제66조</td><td>「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39</td><td>도시농업과</td><td>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td><td>제16조</td><td>「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40</td><td>연구개발과</td><td>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td><td>제15조제2항</td><td>「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td><td>「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41</td><td>생태하천과</td><td>고양시 지하수 조례</td><td>제10조</td><td>「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td><td>「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42</td><td>수도행정과</td><td>고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td><td>제21조</td><td>「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td><td>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able>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38	재정비관리과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6조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9	도시농업과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16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40	연구개발과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41	생태하천과	고양시 지하수 조례	제10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42	수도행정과	고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1조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38	재정비관리과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6조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39	도시농업과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16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40	연구개발과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41	생태하천과	고양시 지하수 조례	제10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42	수도행정과	고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1조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현행	개정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4조에 따라 고양시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경우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계약의 취소 등) ① (생략) 1. (생략) 2. 제13조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3.~7. (생략) ②~④ (생략) 제20조(수탁 대상기관의 제한) 제17조제1항의 사유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수탁 대상기관의 응모 자격을 제한한다. 제22조(위탁사무 감사)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13조제3항에 따라 적절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18조(계약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 ----- 3.~7.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수탁 대상기관의 제한) 제18조제1항----- ----- ----- -----. 제22조(위탁사무 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14조제3항----- -----.
「고양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자매결연 의결)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제14조(자매결연 의결) ----- ----- ----- 「지방자치법」 제47조----- -----. 제25조(수당 등) -----

현행	개정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고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7조(수여자의 권리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② (생략)	제7조(수여자의 권리 등) ① ----- -----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 -----. ② (현행과 같음)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생략) 1. 「지방자치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생략)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지방자치법」 제102조----- ----- ----- 2. (현행과 같음)
「고양시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 -----.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고양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 -----.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에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현행	개정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① 시장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고양시의 일자리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일자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4조(예산의 지원)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생략) 제32조(시설물의 관리) ①~② (생략) ③ 고양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재산의 처분제한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	-----. 제7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① ----- ----- -----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 ----- ---. ② (현행과 같음)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 -----.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4조(예산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시설물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현행	개정
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3조(위탁관리) ① 고양시장은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위탁관리) ① ----- ----- -----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고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생략) 1.~2. (생략) 3. 제6조제1항제3호: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현행과 같음) 1.~2. (생략) 3.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 -----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문화적 향유 및 문화체험·교육기회 확대 등 문화 복지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고양문화의 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 ----- ----- ----- ----- -----.

현행	개정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지방자치법」 제159조----- -----.
제16조(준용) ① (생략)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3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따른다.	제13조(이의신청) ----- ----- 「지방자치법」 제157조-----.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리모델링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제10조(리모델링 기금의 설치) ① ----- -----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제26조(준용) ① (생략)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6조(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고양꽃전시관 관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현행	개정
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일산문화공원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④ (생략)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른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고양시의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조(목적)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 ----- ----- ----- -----.

현행	개정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2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회의) ①~④ (생략)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5조(회의 등) ①~③ (생략)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	제15조(회의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
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준용) ----- ----- ----- -----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제20조의2(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	제20조의2(준용) ----- ----- -----

현행	개정
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고양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4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수당 등) -----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제7조(회의 등) ①~④ (생략)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생략)	제7조(회의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⑥ (현행과 같음)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및 여비) -----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행	개정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8조(수당 등) ① -----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② (현행과 같음)
「고양시 건축 조례」	
제15조(수당) 건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4(위원회의 회의 등) ①~③ (생략)	제4조의4(위원회의 회의 등) ①~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생략) 제30조(준용) ① (생략)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④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21조(수당 등) 사업협의회 및 위원회 (소위원회 포함)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나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특별회계의 용자조건 등) ①~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9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제21조(수당 등) ----- -----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7조(특별회계의 용자조건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8조----- ----- -----.
「고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	제10조(수당 등) ----- -----「고

현행	개정
<u>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1조에 따른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u>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 -----.

현행	개정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생략) 1.~4. (생략) 5.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6.~10.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 민원----- -----. 6.~10.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13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① - -----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민원-----민원처리 기준표----- -----.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 ----- ----- ----- ----- -----.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통합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준용) ----- -----

현행	개정
은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제3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고양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 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 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 관을 모집·선정하여 시보 및 고양시 (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 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 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 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 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생략) ②~⑤ (생략)	제3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 ----- ----- -----법 제103조의3제1항----- ----- ----- ----- -----. 1. ----- ----- 법 제103조의3제1항----- ----- ----- ----- 2. (현행과 같음) ②~⑤ (현행과 같음)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략) ② 그 밖의 기금의 수입과 지출 및 출 납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통합관 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고 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고양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고양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5조(공정무역 제품 구매촉진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	제15조(공정무역 제품 구매촉진 등) ① ----- -----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현행	개정
칙」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④ (생략)	----- ----- -----. ②~④ (현행과 같음)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 ----- ----- -----.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준용) ----- ----- -----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 -----.
제48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결산 및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관계 법령 및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8조(관계 규정의 준용) ----- ----- -----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현행	개정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6조(관계규정의 적용)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6조(관계규정의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관련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준용)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 ----- ----- -----.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3.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 -----. 3. (현행과 같음)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특별법 제25조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① ----- ----- 특별법 제26조

현행	개정
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로 한다.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준용) ----- ----- -----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5조(회계관리) ① 문화원 운영을 위한 회계관리는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②~③ (생략)	제25조(회계관리) ① ----- -----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②~③ (현행과 같음)
「고양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4조----- ----- -----.

현행	개정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1.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3. -----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고양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완화) 시장은 비도심지등 수송수요가 지극히 적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2”의 등록기준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대수를 1대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완화)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3----- ----- ----- ----- -----.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 -----.
제3조(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상속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조(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 ② (현행과 같음)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① (생략) 1. 빗물침투시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2. 빗물저류시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관리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 -----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 ----- ② -----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7제3항-----.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과 적용범위 등) ① (생략) ② 적용범위는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과 적용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현행	개정
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준용) ----- ----- -----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 -----.
「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별)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③~④ (생략)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별) ①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 ----- -----. ②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 ③~④ (현행과 같음)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6조(회계관리 및 관계 규정 준수) 이	제66조(회계관리 및 관계 규정 준수) --

현행	개정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정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 <u>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을 따른다.	----- ----- ----- 「 <u>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제16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입지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16조(회계관리) ----- ----- 「 <u>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u> 」----- ----- -----.
「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5조(사용료 등) ① (생략) ②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고양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u> 」----- ----- ----- -----.
「 고양시 지하수 조례 」 제10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 ----- ----- 「 <u>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u> 」----- ----- ----- -----.
「 고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 -----

현행	개정
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u>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등 개정된 법령을 인용하거나 용어 등이 변경된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7조).
- 나.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8조).
- 다. 그 밖에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제9조).

제26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월 10일

고양시 조례 제2632호

고양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고양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차량등록과
입 안 자	과 성	장 명	차량등록과장 김 규 진
	팀 성	장 명	특별사법경찰2팀장 남 성 진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은 주 031-8075-4773

고양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제안이유

- 2016년 제정 이후로 신고와 포상금 지급건이 없으며, 일반시민이 자동차의 불법운행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신고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조례를 폐지함.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월 10일

고양시 규칙 제1154호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를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법, 영, 조례”를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로 하고, “비치하고”를 “갖추고”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기재”를 각각 “기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재”를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일치하는지 여부를”을 “일치하는지”로, “소인”을 “소인(消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기재”를 각각 “기록”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재”를 “기록”으로 한다.

제10조 중 “아니한” 을 “않는”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긴급을 요하는” 을 “긴급한” 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그렇지 않다” 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 “기재” 를 “기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손처리” 를 “시효완성정리” 로, “아니한다” 를 “않는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 을 “않은” 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정리보류 등)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정리보류표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제21조 중 “관리함으로써” 를 “관리하여”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

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징수과
입 안 자	과 성 명	징수과장 강 복 선
	팀 성 명	체납행정팀장 양 미 례
	담 당 자 성명·전화	양 미 례 031-8075-2261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 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팀장		납액 통지 제 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	세액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							
납세인원		시 구 번길 의 명							
적요	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 로 표시)로 기재									

(뒤 쪽)

내역서

[illegible]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2호서식]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 등]결정액 통지부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3호서식]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 등]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발의일 : 년 월 일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입징수관 (인)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시·구 []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5호서식]

징수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연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illegible]

297mm×210mm(백상지 80g/m²)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채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을)]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시세징수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고양시 시세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 <u>갖추고</u> ----- ----- ----- ----- ----- -----.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생략)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부과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부과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기록</u> ----- ----- ----- <u>기록</u> ----- -----. ③ ----- ----- -----

을 기재하여야 한다.

1.~3. (생략)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시금고에서 시세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날인하거나 전자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액 통지서에 따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며,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생

--기록-----.

1.~3. (현행과 같음)

④ -----

-----기록-----
--.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

-----기록-----
-----.

② -----

-----일치하는지-----
-----소인(消印)-----
-----.

③ -----

-----기록-----

-----.

④ -----

-----기록-----.

제7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현행

략)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액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액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감액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 같음) ② ----- ----- ----- 기록----- -----기록----- -----.
제10조(소인 불일치 자료 등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소인하였으나 부과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제15조(세입마감) ① 시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마감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10조(소인 불일치 자료 등의 처리) -- ----- -----않는----- ----- ----- -. 제15조(세입마감) ① ----- ----- ----- ----- -----긴급한-----그렇지 않다.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부서의 장은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에 대하여는 다음해 1월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시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	제16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 ----- -----대해서는----- ----- -----기록----- -----. ② ----- -----시효완성정리----- -----않는다. ③ ----- ----- ----- -----않은----- -----

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u>제17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u> <u>제18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u> <u>제19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u> <u>제2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보며,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u>	-----. <u>제17조(정리보류 등)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정리보류표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u> <u>제18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록해야 한다.</u> <u>제19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u> <u>제2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u> ----- ----- -----관리하여 ----- ----- ----- ----- -----.
--	---

현행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		년 월 일 (인)		
팀장	납액통지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	세액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W)				
납세인원	시 구 반길 외 명				
적요	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개정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		년 월 일 (인)		
팀장	납액통지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	세액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W)				
납세인원	시 구 반길 외 명				
적요	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개 정

(4) (5)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30g/㎡)

개 정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50g/㎡)

개 정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 등]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이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발의일 : 년 월 일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입징수관 (인)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시 구 []

[illegible]210mm×297mm(백상지 80g/m²)

개 정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징수부

한글
로마자

대한민국
대한민국

[illegible]

0.5mm × 2.0mm (약 0.01g)

현행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갑)]

(앞 쪽)

결 손 처 분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 처분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년 월 일						
채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개정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갑)]

(앞 쪽)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년 월 일						
채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현행

(뒤쪽)

결손처분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개정

(뒤쪽)

정리보류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개 정

[별지 제9호서식(을)]

[illegible]210mm×297mm(책상지 80g/cm²)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안이유

-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결손처분의 용어 정비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를 구분하여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용어를 변경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월 10일

고양시 규칙 제1155호

고양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양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정비) 고양시 규칙 중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제명 변경 사항 등을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법무담당관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법무담당관 서 병 하
	팀 장 성 명	법제지원팀장 이 영 인
	담 당 자 성명·전화	오 규 은 (031-8075-2303)

[별표 5]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정비 내역(제6조 관련)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	평화미래 정책관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조례 제10조제2항에 다른 “당해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	조례 제11조제2항에 다른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	인용 법령 및 제명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	행정지원과	고양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1조	「지방자치법」 제106조	「지방자치법」 제119조	「지방자치법」 개정
3			제3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	「지방자치법」 개정
4		고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1조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자치법」 개정
5	회계과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7조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용 법령 및 제명 변경 등에 따른 정비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신 설>	제6조(「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정비) 고양시 규칙 중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제명 변경 사항 등을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하며, 그 내용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현행		개정																																							
<신 설>		[별표 5]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정비 내역(제6조 관련) <table><tr><th>연번</th><th>부서명</th><th>자치법규명</th><th>해당조문</th><th>현행</th><th>개정</th><th>비고</th></tr><tr><td>1</td><td>평화미래정책관</td><td>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td><td>제8조제1항</td><td>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당해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td><td>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td><td>인용 법령 및 제명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r><td>2</td><td rowspan="3">행정지원과</td><td rowspan="2">고양시 사무인계인수 규칙</td><td>제1조</td><td>「지방자치법」 제106조</td><td>「지방자치법」 제119조</td><td>「지방자치법」 개정</td></tr><tr><td>제3조제1항</td><td>「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td><td>「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td><td>「지방자치법」 개정</td></tr><tr><td>4</td><td>고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td><td>제1조</td><td>「지방자치법」 제111조</td><td>「지방자치법」 제124조</td><td>「지방자치법」 개정</td></tr><tr><td>5</td><td>회계과</td><td>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td><td>제7조</td><td>「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td><td>「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d>인용 법령 및 제명 변경 등에 따른 정비</td></tr></table>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	평화미래정책관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당해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	인용 법령 및 제명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	행정지원과	고양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1조	「지방자치법」 제106조	「지방자치법」 제119조	「지방자치법」 개정	제3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	「지방자치법」 개정	4	고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1조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자치법」 개정	5	회계과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7조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용 법령 및 제명 변경 등에 따른 정비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	평화미래정책관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당해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	인용 법령 및 제명 변경 등에 따른 정비																																			
2	행정지원과	고양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1조	「지방자치법」 제106조	「지방자치법」 제119조	「지방자치법」 개정																																			
제3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	「지방자치법」 개정																																				
4		고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1조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자치법」 개정																																			
5	회계과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7조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용 법령 및 제명 변경 등에 따른 정비																																			

현	행	개	정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			
제8조(기금의 지원목적외 사용)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당해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8조(기금의 지원목적외 사용)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고양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라 고양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고양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19조----- ----- ----- ----- ----- ----- -----.	
제3조(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인수)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생략) ③ (생략)		제3조(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인수) 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고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시와 구·동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24조----- ----- ----- ----- -----.	

현행	개정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고양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등 개정된 법령을 인용하거나 제명 등이 변경된 규칙을 일괄로 개정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제명 변경 사항을 정비함(제6조).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월 10일

고양시 규칙 제1156호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예산담당관
입 안 자	과 성	장 명	예산담당관 신 영 호
	팀 성	장 명	재정기획팀장 최 종 남
	담 당 자 성명·전화		정 은 주 031-8075-2308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및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따라 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시행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규칙을 폐지함.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월 10일

고양시 규칙 제1157호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아동청소년과
입안자	과장 성명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팀장 성명	보육정책팀장 황영선
	담당자 성명·전화	문현주 031-8075-3352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제안이유

-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을 '22. 4. 29. 개정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어, 규칙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규칙을 폐지함.

고양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정 폐지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월 10일

고양시 훈령 제396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정 폐지훈령

고양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획정책관
입안자	과장 성명	기획정책관 최현석
	팀장 성명	조직제안팀장 김문식
	담당자 성명·전화	이민지 031-8075-2396

고양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정 폐지훈령

□ 제안이유

-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으로 「고양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이 폐지(2013. 1. 18.)됨에 따라 해당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훈령을 폐지함.

고양시 현충탑관리사무소 설치 및 관리인 복무 규정 폐지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월 10일

고양시 훈령 제397호

고양시 현충탑관리사무소 설치 및 관리인 복무 규정
폐지훈령

고양시 현충탑관리사무소 설치 및 관리인 복무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과장 성명	복지정책과 유선준
	팀장 성명	보훈정책팀장 정현주
	담당자 성명·전화	강인규 031-8075-3248

고양시 현충탑관리사무소 설치 및 관리인 복무 규정 폐지훈령

☐ 제안이유

- 「고양시 현충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고양시 현충탑관리사무소 설치 및 관리인 복무 규정」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정(2010.4.30.)함에 따라 이 훈령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훈령을 폐지함.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297호선 외 1개 노선]사업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22-245호(2022. 7. 15.)로 실시계획(변경) 고시한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297호선 외 1개소(안터취락 내 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제9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작성내용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0일

고 양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사항) 내용

가.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97	8 ~ 13	국지 도로	838 (348)	신원동 119-28	신원동 293-10	일반 도로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6-5096호 (06.07.03)	-
변경	소로	2	297	8 ~ 13	국지 도로	838 (348)	신원동 119-28	신원동 293-10	일반 도로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6-5096호 (06.07.03)	선형 변경

나.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 2-297	소로 2-297	○ 도로 선형 변경	○ 현황측량 결과 반영

2.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소로2-297호선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258-8번지 일원
- 대로2-11호선(일부구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29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소로2-297호선 외 1개소(안터취락 내 도로)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고양시장 (공사과)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구 모				기능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소로	2	297	8-13	국지 도로	838	-	신원동 119-28	신원동 293-10	일반 도로	-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6-5096호 (06.07.03.)	
금회시행 (기정)	소로	2	297	8-13	국지 도로	838	9,131	신원동 119-28	신원동 293-10	일반 도로	-		
금회시행 (변경)	소로	2	297	8-13	국지 도로	838	9,111	신원동 119-28	신원동 293-10	일반 도로	-		
결정	대로	2	11	30-46	주간선 도로	11,160	-	성사동 523-5	벽제동 산38-14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440호 (74.12.16.)	
금회시행	대로	2	11	3-4	주간선 도로	105	450	신원동 276-1	신원동 293-3	일반 도로	-		가감속차로 확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라, 바”항과 같음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토지조서
 ○ 소로2-297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 성명		관계인 / 성명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계	기정	69필지		9,444	9,131					
	변경	68필지		9,442	9,111					
1	기정	신원동	119-28	도	311	311	고양시			
2	기정	신원동	255-19	답	73	73	고양시			
3	기정	신원동	255-6	도	16	16	고양시			
4	기정	신원동	255-21	답	15	15	고양시			
5	기정	신원동	255-16	답	138	138	고양시			
6	기정	신원동	255-20	도	6	6	고양시			
7	기정	신원동	255-17	도	56	56	고양시			
8	기정	신원동	255-18	도	10	10	고양시			
9	기정	신원동	256-9	도	56	56	고양시			
10	기정	신원동	256-7	대	1	1	고양시			
11	기정	신원동	257-5	도	373	373	국(국토교통부)			
12	기정	신원동	257-6	도	15	15	고양시			
13	기정	신원동	258-4	답	32	32	고양시			
14	기정	신원동	258-6	답	4	4	고양시			
15	기정	신원동	258-7	답	6	6	고양시			
16	기정	신원동	258-8	답	167	167	고양시			
17	기정	신원동	259-3	도	159	159	국(국토교통부)			
18	기정	신원동	259-2	도	96	96	고양시			
19	기정	신원동	260-34	답	312	312	고양시			
20	기정	신원동	260-42	답	49	49	고양시			
21	기정	신원동	260-35	대	63	62	고양시			
	변경	신원동	260-35	대	63	44	고양시			
22	기정	신원동	260-43	대	2	2	고양시			
	변경	신원동	260-43	대	-	-	고양시			
23	기정	신원동	260-45	대	126	100	고양시			
24	기정	신원동	260-9	도	127	127	고양시			
25	기정	신원동	260-37	도	92	92	고양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 성명		관계인 / 성명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6	기정	신원동	260-46	대	7	7	고양시			
27	기정	신원동	260-33	도	51	51	고양시			
28	기정	신원동	260-13	대	289	3	은유건설 주식회사	고양시 덕양구 솔밭1길32 (원흥동)		
29	기정	신원동	260-40	도	26	26	고양시			
30	기정	신원동	260-21	도	15	15	고양시			
31	기정	신원동	260-41	도	4	4	고양시			
32	기정	신원동	260-24	도	4	4	고양시			
33	기정	신원동	261-8	전	18	18	고양시			
34	기정	신원동	261-9	전	13	13	고양시			
35	기정	신원동	262-1	대	87	87	고양시			
36	기정	신원동	266-24	답	24	24	고양시			
37	기정	신원동	266-25	답	16	16	고양시			
38	기정	신원동	266-30	답	471	471	고양시			
39	기정	신원동	266-28	답	20	20	고양시			
40	기정	신원동	267-2	도	132	132	고양시			
41	기정	신원동	267-7	도	280	280	국(국토교통부)			
42	기정	신원동	267-9	도	102	102	고양시			
43	기정	신원동	272-8	답	3	3	고양시			
44	기정	신원동	275-10	답	181	181	고양시			
45	기정	신원동	275-11	답	112	112	고양시			
46	기정	신원동	293-4	전	32	32	고양시			
47	기정	신원동	293-5	전	173	173	고양시			
48	기정	신원동	293-10	전	148	148	고양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 성명		관계인 / 성명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49	기정	신원동	294-17	답	4	4	고양시			
50	기정	신원동	294-18	답	89	89	고양시			
51	기정	신원동	294-20	답	89	89	고양시			
52	기정	신원동	294-21	답	11	11	고양시			
53	기정	신원동	294-7	답	76	76	고양시			
54	기정	신원동	294-11	답	85	85	고양시			
55	기정	신원동	470-16	구	47	47	국(건설부)			
56	기정	신원동	470-21	구	255	255	국(건설부)			
57	기정	신원동	470-19	구	29	29	국(건설부)			
58	기정	신원동	473-17	도	320	320	고양시			
59	기정	신원동	473-13	도	45	45	고양시			
60	기정	신원동	473-18	도	543	543	고양시			
61	기정	신원동	473-15	도	25	25	고양시			
62	기정	신원동	475-11	도	63	63	고양시			
63	기정	신원동	475-6	도	700	700	고양시			
64	기정	신원동	475-17	도	1,976	1,976	고양시			
65	기정	신원동	475-3	도	76	76	고양시			
66	기정	신원동	475-4	도	8	8	고양시			
67	기정	신원동	489-7	도	300	300	고양시			
68	기정	신원동	489-6	천	28	28	고양시			
69	기정	신원동	산26-3	임	162	162	고양시			

◦ 대로2-11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 성명		관계인 / 성명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계	기정			7,550	450					
1	기정	신원동	275-4	답	1,041	185	국(국토교통부)			
2	기정	신원동	275-5	답	1,168	131	국(국토교통부)			
3	기정	신원동	276-1	답	857	4	국(국토교통부)			
4	기정	신원동	292	답	86	17	국(국토교통부)			
5	기정	신원동	293-3	전	1,857	79	국(국토교통부)			
6	기정	신원동	473	도	2,541	34	국(국토교통부)			

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재공람 공고

고양시 공고 제2022-2001호로 공람 공고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64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 합니다.

2023년 1월 10일

고 양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2	196	12~23	집산 도로	98	사리현동 34-1	원당동 1063-22	일반 도로	-	-	-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중로 2-196	◦ 중로2류 신설 - 폭 : 12~23m - 연장 : 98m	◦ 수도권(고양)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 확립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진입도로 신설(원당교 폭원 증가 반영)

다.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3	원당천	지방2급 하천	원당동 244-3	사리현동 7-5	-	2.61	20~70	119,857	고양시고시 제98호 (2005.09.05)	
변경	13	원당천	지방2급 하천	원당동 244-3	사리현동 7-5	-	2.61	20~70	119,857	고양시고시 제98호 (2005.09.05)	중로2-196 일부구역 중복결정 (613㎡)

라.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3	원당천	◦ 중로 2-196호선과 일부 중복결정 - 중복결정 면적 : 613㎡	◦ 수도권(고양)화훼종합유통센터 진입도로 신설에 따라 기 결정되어 있는 하천⑬의 일부지역을 중로 2-196호선 일부와 중복으로 결정하고자 함

2.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 01. 10. ~ 2023. 01. 26.(시보게재일로부터 17일간)

3.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031-8075-3084)

4. 관련도서 : 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5.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람(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12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전 열람 공고

1. 고양시 고시 제2022-188호(2022. 5. 31.)로 고시한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산11-4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12호선] 사업에 대하여,
2. 편입토지 면적 및 준공예정일 변경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고시 전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42)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월 10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산11-4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도시계획시설(소로3-512호선) 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고양시장(공사과장)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512	6	국지 도로	794	-	대로2-11	신원동 산14-1	일반 도로	-	고양시고시 제2009-106호 (09.05.04.)	
금회시행 (기정)	소로	3	512	6	국지 도로	747	5,451	대로2-11	신원동 산14-1	일반 도로	-	-	
금회시행 (변경)	소로	3	512	6	국지 도로	747	5,280	대로2-11	신원동 산14-1	일반 도로	-	-	감) 171㎡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자.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차.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42)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사·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1. 토지조사

일련번호		소재지		공부상		실편입	소유자		관계인		
		주소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계	기정					5,451					
	변경					5,280					
1		덕양구 신원동	산11-41	임	2,249	35	경기도	국			
2		“	산11-7	임	12,265	38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52 현대에프레보 334호	전주이씨월산대 군파종회			
3		“	산11-56	임	201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5번길 *8 (신원동)	이*선			
4		“	434-2	도	149	11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4	이*호외2인			
		“	434-7	도	121	12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4	이*호외2인			
5	기정	“	433-2	도	66	5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4	이*호			
	변경	“	433-12	도	57	5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4	이*호			
6		“	433-1	전	58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길**-1,*0*호(구기동,**빌라)	이*선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북인천지점)	농협은 행주식 회사	근저당 권
6-1	기정	“	434-3	대	569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25길 7	주식회사 두조원			
	변경	“	434-8	대	3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25길 7	주식회사 두조원			
7	기정	“	434-1	대	254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4-1	최*현			
	변경	“	434-5	대	7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4-1	최*현			
8	기정	“	433-3	도	172	15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4	이*호			
	변경	“	433-13	도	145	14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4	이*호			
9	기정	“	433-6	전	1,557	3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3-6	이*호			
	변경	“	433-14	전	37	3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3-6	이*호			
10	기정	“	470-15	구	1,458	47	건설부	국			
	변경	“	470-22	구	46	46	건설부	국			
11	기정	“	425-4	도	208	8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4	이*호			
	변경	“	425-9	도	28	2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4	이*호			
11-1	변경	“	425-10	도	60	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4	이*호			

12	기정	“	425-3	도	36	3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4	이*호			
	변경	“	425-8	도	35	3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4	이*호			
13	기정	“	425-6	도	78	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6-1	윤*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 (홍제동 지점)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변경	“	425-11	도	49	49	고양시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삼송테크노지점)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14	기정	“	425-2	전	175	1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원길 ** (홍제동)	윤*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 (홍제동 지점)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변경	“	425-7	전	110	1110	고양시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삼송테크노지점)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15	기정	“	424-2	대	899	10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4	이*훈			
	변경	“	424-4	대	109	109	고양시	국			
16	기정	“	426-5	전	974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	정*숙외1인			
	변경	“	426-9	전	1	1	고양시	국			
17		“	473-19	도	63	63	국토교통부	국			
18	기정	“	424-3	임	621	32	고양군 원당면 신원리 **3	이*근외3인			
	변경	“	424-5	임	32	32	고양시	국			
19	기정	“	산83	도	724	543	국토교통부	국			
	변경	“	424-9	도	513	513	국토교통부	국			
19-1	변경		424-7	도	30	30	국토교통부	국			
20	기정	“	산16-4	임	18,942	58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52현대에프레보334호	전주이씨월산대			
	변경	“	426-10	임	527	52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52현대에프레보334호	전주이씨월산대			
21	기정	“	산11-30	임	9,891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3-4	이*호외3인			
	변경	“	424-6	임	17	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3-4	이*호외3인			
22	기정		산15-20	임	48,198	605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3 송림마을아파트 *단지 *05-1*0*	김*경			
	변경		420-3	임	536	536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3 송림마을아파트 *단지 *05-1*0*	김*경			
23			산14-1	임	91,657	494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139 이화회관 302호	전주이씨계성군			

24	기정	“	420	대	489	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0	이*휘	고양군 원당읍 주교리 122-5	원당농 업협동 조합	근저당 권
	변경	“	420-1	대	6	6	고양시	국	고양군 원당읍 주교리 122-5	원당농 업협동 조합	지상권
25	기정	“	419-12	전	129	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0	이*휘			
	변경	“	419-17	전	13	13	고양시	국			
26	기정	“	421-7	전	143	4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1-4	황*호			
	변경	“	421-11	전	41	41	고양시	국			
27	기정	“	484	도	298	287	국토교통부	국			
	변경	“	484-4	도	241	241	국토교통부	국			
28	기정	“	421-4	대	330	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1-4	황*호			
	변경	“	421-8	대	7	7	고양시	국			
29	기정	ㄴ	421-6	전	337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1-4	황*호			
	변경	ㄴ	421-10	전	12	12	고양시	국			
30	기정	ㄴ	419-6	전	594	3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0, **6동 1*04호 (성사동,레미안****)	신*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96-4	고양축 산업협 동조합	근저당 권
	변경	ㄴ	419-16	전	39	39	고양시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96-4	고양축 산업협 동조합	지상권
31	기정	ㄴ	419-14	도	20	17	고양시	국			
	변경	ㄴ	419-18	도	16	16	고양시	국			
32	기정	ㄴ	421-5	도	93	21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1동 *03호 (도원동,도원*****아파트)	김*일외1인			
	변경	ㄴ	421-9	도	20	20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1동 *03호 (도원동,도원*****아파트)	김*일			
33	기정	ㄴ	422	전	278	19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7	이*휘			
	변경	ㄴ	422-2	전	197	19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7	이*휘			
34	기정	ㄴ	388-2	전	4,041	3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2-2	이*휘			
	변경	ㄴ	388-5	전	33	3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2-2	이*휘			
35	기정	ㄴ	483-13	구	2,164	967	건설부	국			
	변경	ㄴ	483-21	구	967	967	건설부	국			

36	기정	ㄴ	423-4	도	30	2	고양시	국			
	변경	ㄴ	423-7	도	2	2	고양시	국			
37	기정	ㄴ	423-3	도	79	5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 달빛마을 **4-1*02	이*훈	서울 종로구 수송동 **5-1	이*심	근저당 권
	변경	ㄴ	423-6	도	52	52	고양시	국			
38	기정	ㄴ	385-15	도	41	3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7	이*렴			
	변경	ㄴ	385-22	도	32	3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7	이*렴			
39		ㄴ	385-16	답	18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7-*4	이*용			
40	기정	ㄴ	385-13	창	4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7-*4	이*용			
	변경	ㄴ	385-21	창	1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7-*4	이*용			
41	기정	ㄴ	385-10	도	16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7-*4	이*용			
	변경	ㄴ	385-20	도	1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7-*4	이*용			
41-1	변경	ㄴ	384-2	도	23	1	고양시	국			
42	기정	ㄴ	385-2	답	102	28	고양시	국			
	변경	ㄴ	385-19	답	26	26	고양시	국			
43	기정	ㄴ	386-2	전	231	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5번길 **0-5	윤*원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조강로 47 (운정중앙지점)	김포파 주인삼 농업협 동조합	근저당 권
	변경	ㄴ	386-10	전	9	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5번길 **0-5	윤*원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조강로 47 (운정중앙지점)	김포파 주인삼 농업협 동조합	근저당 권
44	기정	ㄴ	386-1	대	513	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1	김*래			
	변경	ㄴ	386-9	대	20	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1	김*래			
45	기정	ㄴ	386-5	임	898	9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1	이*훈			
	변경	ㄴ	386-12	임	95	9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1	이*훈			

2. 지장물조사

- 지장물

순위	소재지	지번	종별	구조	수량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신원동	433-1	담장	콘크리트,철재	13.5m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4-1	최*현	
2	"	425-4	문주	철재	2m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4	이*호	
			조경석	H=0.5	5m			
			소나무	R=20	1주			
			진나무	R=10	1주			
			벚나무	3지 R=30	1주			
			회양목	H=0.5	5m			
3	"	산15-20	문주	콘크리트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3 **마을아파트3단지 30*-1*0*	김*경	
4	"	421-4	건물	비닐하우스	1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1-4	황*호	
5	"	385-4	담장	조경석	15.0m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0-*5	오*만	
6	"	385-4	계단	콘크리트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0-*5	오*만	
7	"	386-2	문주	벽돌	2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5번길 **0-5(신원동)	윤*원	
8	"	386-1	건물	스레트	1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1	김*래	
9	"	산14-1	문주	콘크리트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릉동139 이화회관302호	전주이씨계성 군파중회	

- 맨홀

순위	소재지	구분	위치	방향	수량	비고
1	신원동	상수맨홀	STA0+188	좌	1	
2	"	상수맨홀	STA0+358	우	1	
3	"	우수맨홀	STA0+544	우	1	
합계		상수맨홀			2	
		우수맨홀			1	

- 전력주

순위	소재지	위치	방향	전주번호	소관청	비고
1	신원동	STA0+26	좌		한국전력공사	
2	"	STA0+111	우		"	
3	"	STA0+116	우		"	
4	"	STA0+145	우		"	
5	"	STA0+209	우		"	
6	"	STA0+361	좌		"	
7	"	STA0+360	우		"	
8	"	STA0+373	좌		"	
9	"	STA0+403	좌		"	
10	"	STA0+451	좌		"	
11	"	STA0+507	좌		"	
12	"	STA0+577	좌		"	
13	"	STA0+639	우		"	
14	"	STA0+764	좌		"	

- 통신주

순위	소재지	위치	방향	전주번호	소관청	비고
1	신원동	STA0+95	우		KT	
2	〃	STA0+114	우		〃	
3	〃	STA0+183	좌		〃	
4	〃	STA0+314	좌		〃	
5	〃	STA0+391	좌		〃	
6	〃	STA0+417	좌		〃	
7	〃	STA0+433	좌		〃	
8	〃	STA0+478	좌		〃	
9	〃	STA0+503	좌		〃	
10	〃	STA0+531	좌		〃	
11	〃	STA0+569	좌		〃	
12	〃	STA0+600	좌		〃	
13	〃	STA0+612	좌		〃	
14	〃	STA0+640	우		〃	
15	〃	STA0+647	좌		〃	
16	〃	STA0+726	좌		〃	